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부여·발행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고 성장하면서 실제로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막막할텐데, 이번 칼럼에서는 필요한 절차 및 근거 법령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에서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 외에 회사와 직원 사이에 따로 약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합의한 내용이 법에서 허용된 것인지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상법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한 경우에 행사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vesting 제도의 영향을 받아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은 없지만 단축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항목	관련법령	내용
①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 기재	상법 제340조의3 제1항	• 정관의 규정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할 것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등기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의 3호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등기
③	이사회 소집 결정	상법 제390조	• 각 이사 또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소집을 정한 경우 해당 이사가 이사회 소집 • 이사회소집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이사 및 감사들로부터 이사회소집통지생략동의서를 교부 받음

④	주주총회 소집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상법 제362조	- 이사회결의로 사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 - 이사회 의사록 작성
⑤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발송	상법 제363조	주주총회일 2주전(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전)에 각 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거나, 모든 주주로부터 주주총회소집절차생략동의서를 교부받음.
⑥	주주총회특별결의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340조의3 제2항, 제434조	-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로 정하거나,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⑦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	상법 제340조의3 제3항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⑧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본점 비치	상법 제340조의3 제4항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석 변호사

Partner

hoseok.jung@seumlaw.com

T. 02.562.3133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 2016 SEUM Law.